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및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안내

1. 관련

- 가. 교원양성연수과-3322(2021.6.21.) 및 3323(2021.6.21.)
- 나. 「교원자격검정령」 (대통령령 제31825호, 2021.6.23. 일부개정)
- 다.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(교육부령 제238호, 2021.6.23. 일부개정)

2.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및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2021.6.23. 공포·시행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각 기관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교원자격검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 내용

- 1) 「교원자격검정령」 :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
- 2)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: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

나.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(제20028호)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3.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자료가 조회됨을 포함하여 동 개정령의 내용을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문서는 각 시·도 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전체(교육대학,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육과,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및 전문대학)에 안내하는 내용입니다.

- 붙임 1.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령 1부.
2.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1부. 끝.

교육부 장관



수신자 시도교육청, 고등교육기관전체,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, 국군간호사관학교장

교육연구사 **손범익** 교육연구관 **박수경** 교원양성연수 **전결** 2021. 6. 23.
과장 **채홍준**

협조자

시행 교원양성연수과-3383 (2021. 6. 23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976 팩스번호 044-203-6706 / knueson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